

# 2021년 청렴·인권실무협의회 운영 결과보고

(감사팀, '21. 12. 9.(목))

## □ 목적

- 우리원의 윤리경영 실천과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 회의개요

- (일시) 2021. 12. 8.(수), 10:00 ~ 11:00
- (장소) 본원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총 7명(청렴·감사, 인사, 경영, 근로자위원, 직원 대표)

연번	부서(지역본부)	직 급	성 명	비고
1	감사팀	5급	강○○	청렴담당자
2		6급	임○○	
3	전략기획부	5급	윤○○	경영평가 담당자
4	경영지원부	4급	이○○	인사 담당자
5	취업지원부	5급	심○○	근로자 위원
6	정보화전략부	4급	진○○	본원 대표
7	중부지역본부	라급	김○○	지역본부 대표

## ○ (주요내용)

연번	주요내용
1	2021년 감사팀 추진 업무 공유
2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 관련 우리원 대응방안 논의
3	2021년 감사팀 추진 업무 평가 등

## □ 주요내용

구분	제안 및 요청내용									
자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평가 등 대비를 위해 감사 및 점검 이후 성과(감사 후 개선사항 등) 정리 제안</li> <li>○ 경영지원부에서 감사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말이 아닌 시기에 재무감사 실시 요청</li> </ul>									
반부패·청렴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 캠페인 영상 등 대내외 홍보 필요</li> <li>○ '21년도 추진한 업무 중 성과가 높거나 호응이 좋았던 업무는 '22년도에도 추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식지를 활용한 퀴즈 등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좋았음</li> <li>- 지역본부에서는 청렴토크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22년도에도 추진하는 것을 권장</li> </ul> </li> <li>○ 향후 배포될 소식지에 직원들이 접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법령 등을 담는 방안 권장</li> </ul>									
이해충돌방지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제도화 필요</li> <li>○ 매뉴얼, 신고·상담 체계 등 인프라 구축 필요</li> <li>○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을 적용할 경우 민간일자리 사업은 적합하나 재정일자리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생각</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0 1417 1460 172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주요내용</th> <th style="width: 25%;">적용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민간일자리 사업</td> <td>수행기관 혹은 참여기업 중 임직원 친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위반사례로 볼 수 있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해충돌방지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지원 일자리사업</td> <td>임직원 친족이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청탁 등의 범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보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탁금지법</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적용법령	민간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혹은 참여기업 중 임직원 친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위반사례로 볼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직원 친족이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청탁 등의 범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보임	청탁금지법
구분	주요내용	적용법령								
민간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혹은 참여기업 중 임직원 친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위반사례로 볼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임직원 친족이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청탁 등의 범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보임	청탁금지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시책 등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감사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필요</li> </ul>									

## □ 향후계획

- 자체감사 사후관리 방안 마련
- '21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업무 성과 분석
- 이해충돌방지법 대응방안 마련 등